

[별지 제22호서식의(가)]<개정 2005.8.4>(규칙 제36조제1항관련)

(○ ○ 방 송 사)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 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제 목 후보자등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보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 있어서 「공직선거법」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이용할 방송시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텔레비전방송시설				라디오방송시설			
시설명	일 자	시 간 (부터~까지)	이용요금	시설명	일 자	시 간 (부터~까지)	이용요금

(○○방송사의 장) 인

주 : “이용요금”란에는 1회 10분(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분)당 이용요금을 기재하되, 이용요금은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·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[별지 제22호서식의(나)] (규칙 제36조제2항 관련) <개정 2019. 5. 30.>

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

1. 후보자의 연설

방송시설구분	횟수	방송시설명	이용일시 (부터 ~ 까지)	소요시간	비고
텔레비전	1				
	2				
	3				
라디오	1				
	2				
	3				

2. 연설원의 연설

방송시설구분	횟수	방송시설명	이용일시 (부터 ~ 까지)	소요시간	연설원 인적사항					비고
				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전화번호	직업	
텔레비전	1									
	2									
	3									
라디오	1									
	2									
	3									

년 월 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「공직선거법」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[○ ○ 당 인]
 [대표자 ○○○ 인]
 [후보자 ○○○ 인]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- 주 : 1. "이용일시"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.
 2. "비고"란에는 "녹화방송" 또는 "생방송"이라 기재합니다.

[별지 제22호서식의(다)] (규칙 제36조제5항 관련) <개정 2015.8.13.>

방송연설원교체신고서

1. 방송시설명
2. 이용일시
3. 방송연설원 교체상황

구 분	성 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직 업	비 고
교체전					
교체후					

년 월 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원을 교체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[○ ○ 당 인]
 [대 표 자 ○ ○ ○ 인]
 [후 보 자 ○ ○ ○ 인]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 : “방송시설명” 및 “이용일시”란은 교체전의 방송연설원이 이용하려던 것을 말합니다.

(후보자)·(정당)의 방송연설신고서

연 설 자			방송시설 구 분	방송시 설 명	이용일시 (부터~까지)	소요시간	비 고
성 명	명부순위	주소(전화)					
			텔레비전				
			라 디 오				
			텔레비전				
			라 디 오				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 있어서 「공직선거법」(제71조제10항)·(제137조의2제6항)의 규정에 따른 (후보자)·(정당)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덧붙임 :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부

신청인 [○ ○ 당 인]
 [대표자○○○ 인]
 [후보자○○○ 인]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주

1. 이 신고서는 국회의원선거,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,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(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합니다)에 있어서 정당의 정강·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시에 사용됩니다.
2. “이용일시”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.
3.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“연설자”란을, 정당의 정강·정책의 방송연설에 있어서는 “명부순위”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4. “비고”란에는 “녹화방송” 또는 “생방송”으로 기재합니다.